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1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보험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김용덕[6571]/E-mail 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7-12652호

시행일자 2023. 12. 28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82호(2023. 12. 28.)

3. 상기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「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」 고시를 개정 발령한 바,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내용

○ 별지 제5호 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(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) 중 제 품별 명칭 삭제

나. 시행일 : 2023. 12. 28.

#붙임자료 : 보건복지부 일부개정안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* 수신처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, 각과개원의협의회, 대한병원장협의회, 한국여자의사회장